

직무관련성 심사·결정서

신청인	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결정주문				
결정이유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

청인

○ ○ ○ 귀하